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5102750(본소), 2016가단83311(반소) 판결
[구상금 · 청구이의]

전 문

원고(반소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 종결 2016. 10. 11.

판결 선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257,599원 및 그
중 25,752,008원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06. 3. 21.까지 연 18%, 2006. 3.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6가단109702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09702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41,089원 및 그 중 28,624,208원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06. 3. 2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6. 6.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원고는 2006. 11. 13.자로 2,872,200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변제충당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현재 구상금채권 잔액은 원금 25,752,008원(28,624,208원-2,872,200원), 확정손해금채권 1,027,927원, 대지급금477,664원의 합계 27,257,599원에 이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 원금잔액 25,752,008원, 확정손해금채권 1,027,927원, 대지급금 477,664원의 합계27,257,599원 및 그 중 원금 25,752,008원에 대하여 위 판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6. 30.부터 2006. 3. 21.까지 연 18%, 2006. 3. 22.부터 2015. 9.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6. 5. 4.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소의 이익도있다.

2. 피고 C의 채무부존재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채무한도액인 3,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5. 7.1. 29,601,070원, 2005. 8. 10. 13,889,640원, 2006. 11. 13. 2,872,200원 합계46,362,91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면서 반소로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제기할 수 있을 뿐, 변론 종결 당시 이미 발생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은 그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2005. 7. 1.자 및 2005. 8. 10.자 변제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유에 불과하고, 2006. 11. 13.자변제는 원고가 이미 이를 자인하여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아